

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의 설치기준(제29조의23제1항 관련)

1. 시설의 규모

- 가. 입소정원(5명 이상 9명 이하)이 입소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하며, 입소정원 1명당 연면적 15.9㎡ 이상의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.
- 나. 응급대상자 및 초기 입소자의 생활지원을 위하여 1인실을 1실 이상 설치할 것을 권장한다.

2. 시설의 구조 및 설비

- 가. 시설의 구조 및 설비는 일조·채광·환기 등 입소자의 보건위생과 재해방지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.
- 나. 「화재예방, 소방시설 설치·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소화설비를 비치하는 등 시설의 실정에 맞게 비상재해에 대비하여야 한다.

3. 시설의 설치에 관한 특례

- 가. 시설 설치자는 시설을 설치할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보하여야 하며, 시설의 설치 목적 외의 목적에 의한 저당권을 해당 토지 및 건물에 설정하여서는 아니 된다.

4. 시설기준

- 가. 침실, 사무실, 요양보호사·자원봉사자실, 상담·교육실, 식당·조리실, 비상재해대비시설, 화장실·목욕실(샤워실), 세탁장·세탁물 건조장을 각각 갖추어야 한다. 다만, 세탁물을 전량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세탁장 및 세탁물 건조장을 두지 않을 수 있다.
- 나. 사무실, 요양보호사·자원봉사자실, 상담·교육실은 1개의 시설로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.

5. 설비기준

- 가. 침실
  - 1) 독신용·동거용·합숙용 침실을 둘 수 있다. 다만, 합숙용 침실은 남실 및 여실로 각각 구분하여야 한다.
  - 2) 입소자 1명당 침실 면적은 5.0㎡ 이상으로 한다.
  - 3) 합숙용 침실 1실의 정원은 3명 이하로 한다.
  - 4) 입소자의 생활용품을 개별로 보관할 수 있는 보관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.

5) 채광·조명 및 방습설비를 갖추어야 한다.

나. 상담·교육실

- 1) 프로그램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.
- 2) 시설을 상담실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상담받는 사람과 상담 내용 등이 노출되지 않도록 칸막이를 설치하고 방음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.

다. 식당 및 조리실: 조리실 바닥재는 내수 소재이고, 조리실은 세척 및 배수에 편리한 구조여야 한다.

라. 화장실 및 목욕실(샤워실)

- 1) 바닥은 미끄럽지 않아야 한다.
- 2) 욕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욕조에 노인의 전신이 잠기지 않는 깊이로 하고, 욕조에의 출입이 자유롭도록 최소 1개 이상의 보조봉과 수직의 손잡이 기둥을 각각 설치하여야 한다.
- 3) 자동온도조절장치를 이용하여 급탕을 하는 경우, 물의 최고 온도는 섭씨 40도 이상이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.

마. 그 밖의 시설

- 1) 복도·화장실 및 그 밖의 필요한 곳에 야간 상용등을 설치하여야 한다.
- 2) 계단의 경사는 완만하여야 하며, 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.
- 3) 바닥은 부드러우면서도 미끄럽지 않은 바닥재를 사용하여야 한다.